**종합건강검진 협약서**

**충남연구원**(이하 **“갑”**이라 한다)과 **건양대학교병원**(이하 **“을”**이라 한다)은 “갑”의 2023년도 임직원 종합건강검진(이하 “종합검진”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계약은 “종합검진”과 관련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수행하여야 할 검진서비스의 범위와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검진대상)** 종합검진 대상자는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통보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. 단, 신청 임직원 외 직원의 배우자 및 가족 등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직원과 동일한 검진항목 및 비용을 적용한다.

**제3조(계약기간)** ① 계약기간은 체결 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은 필요에 따라 “갑”과 “을”의 합의로 동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.

**제4조(검진항목)** “을”이 수행해야 할 검진항목은 “별첨(종합건강검진 항목)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검진비용)** ① 종합검진비용은 1인당(남녀공통) 300,000원으로 정한다. 또한 국가검진비용(1차+암검진)은 검진비와 별도로 “을”이 청구한다.

② ”을”은 “갑”에 대한 검진비용을 종합검진이 완료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, “갑”은 청구 받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월 익월 말일까지 “을”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.

③ 배우자 및 가족의 검진비용은 당일 수납한다.

**제6조(산출물)** "을”은 종합검진을 완료한 후 “갑”의 요구가 있을 시 그 결과를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자료제공)** “갑”과 “을”은 종합검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제공에 상호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계약의 해지)**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 1.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

 2. 당사자가 “종합검진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

3. 기타 “을”의 파산, 강제집행, 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계약의 유지 또는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“갑”이 판단한 경우

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15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**제9조(기밀준수)** ① “을”은 종합검진 수행으로 취득한 “갑”과 “갑”의 임직원 대한 정보를 “갑”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이를 삭제, 변경, 복제 할 수 없다.

② “을”은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종료 후에도 “갑” 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양도금지)** “을”은 “갑”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, 하도급, 위임, 기타 여하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
**제11조(준용 및 협의)**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관례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월 일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“갑”** | **상 호 :**  | **충남연구원** |
|  | **주 소 :** | **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-26** |
|  | **대 표 자 :** | **연구원장 유 동 훈 (인)**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“을”** | **상 호 :** | **건양대학교의료원** |
|  | **주 소 :** | **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58** |
|  | **대 표 자 :** | **의료원장 배 장 호 (인)** |

별첨 : 2023년 충남연구원 임직원 검진항목1부.